

의안번호	제2827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 사항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8. 2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2827호
----------	--------

제출연월일: 2024. 8. 27.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회의 결의를 받아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지방세법 개정 관련 연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불복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임.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

나. 출연 내역

- 출연대상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시기: 2025. 3. 31.까지
- 2025년도 출연금액: 5,906천 원
※ 산출내역: 49,216,680천 원 × 1.2/10,000 = 5,906천 원
- 2024년도 출연금액: 6,022천 원(산출비율 1.2/10,000)

3. 기대효과

-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지방세정 발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3)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나. 비용발생 요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금49,216,680천 원
- 2) 출연금 산출비율: 1.2/10,000

나. 추계의 결과

$$49,216,680\text{천 원} \times 1.2/10,000 = 5,906\text{천 원}$$

- 다. 재원조달방안: 2025년 일반회계로 편성

작성자: 재무과장 이 현 주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2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